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Eliminating Gaps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은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의 감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과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1.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과 특징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대상업종의 점차적 확대, 둘째, 대상 사업장 규모의 점진적 확대이다.

산재보험이 처음 도입·시행된 1964년 광업과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당시 적용 사업장은 64개소에 피보험근로자는 81,798명이다. 다음해인 1965년에는 적용대상 업종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추가하였으며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도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적용대상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업종의 근로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임의가입, 200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운송업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유사자영업자)에 대한 특례가입이 적용되었다.

적용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

지는 사업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2.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관련 문제점: 가입 대상과 적용 범위

산재보험 가입대상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은 여섯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법령에 의한 당연가입, 둘째, 법령에 의한 적용제외, 셋째, 특례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넷째, 특례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당연가입과 이후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탈퇴, 다섯째, 특례에 의한 현장실습생의 당연가입, 여섯째, 특례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당연적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6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단 단서조항을 통하여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업종별, 사업종류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그리고 별목업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농업, 수렵업은 법인에 의한 사업인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2010년도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은 1,578,685개소이며, 피보험근로자는 13,983,443명이다. 가입사업장 1개소당 평균 피보험근로자수는 8.85명이다(표 3).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증가 추세는 2001년 909,461개소를 지수 100으로 하였을 때, 2006년 지수 142(1,292,696개소), 2010년 지수 173(1,578,685개소)이다.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증가 추세는 2001년 10,581,186명을 지수 100으로 하였을 때, 2006년 지수 110(11,688,797명), 2010년 지수 132(13,983,443명)이다.

표 1. 산재보험 연도별 사업장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9년	1972년	1973년	1982년	1987년	2000.7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10인	5인	1인

자료: 고용노동부(2008), 2007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7쪽 참조.

표 2.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대상

업 종	업 종	적용일
- 금융·보험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 벌목업	1인 이상	당연적용에 해당하는 날
-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 농업 - 수렵업	1인 이상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공사착공일

자료: 고용노동부(2010). 200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pp.65.

표 3. 산재보험 업종별 연도별 당연적용 현황(2001~2010)

(단위: 개소, 명)

구분	2001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전산업	909,461	10,581,186	1,292,696	11,688,797	1,594,793	13,489,986	1,532,242	13,699,967	1,578,685	13,983,443
금융보험업	7,145	385,890	26,776	399,638	34,642	570,253	34,610	575,578	35,276	588,859
광업	1,089	19,111	1,267	15,656	1,246	15,275	1,125	13,572	1,094	12,363
제조업	187,253	2,922,342	236,429	3,032,667	255,073	3,103,942	252,106	3,155,312	264,153	3,160,683
전기·가스·수도	,805	49,390	925	53,796	1,077	54,479	1,078	52,470	1,141	53,607
건설업	143,200	2,438,649	149,874	2,547,754	297,521	3,248,508	231,205	3,199,291	214,893	3,190,399
운수·창고·통신업	26,952	660,374	38,199	676,725	43,408	703,249	42,403	697,533	44,263	698,623
임업	3,283	86,550	5,781	73,381	7,390	66,269	6,809	67,364	6,535	68,524
어업	289	1,958	148	352	883	5,395	651	2,543	685	2,740
농업	1,839	24,312	3,281	31,781	4,193	37,739	3,661	37,737	4,069	41,337
기타의 사업	537,609	3,992,610	830,016	4,857,047	949,360	5,684,880	958,594	5,898,567	1,006,576	6,166,308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2010년도 말 기준 한국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근로자는 13,983,443명으로 취업자(23,506천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59.07%, 경제활동인구(24,334천 명)의 57.06%, 총인구(48,747천 명)의 28.48%이다¹⁾. 2008년말 기준 독일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는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에서 74,285,633명(이 중 17,058,553명은 학생 재해보험 피보험자)이며²⁾, 농업부문에서는 2007년도에 보험료납부의무자(농업기업인, 자영농민 등)는 1,638,610명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는 75,924,243명으로 총인구(82,002천명)³⁾의 92.59% 이상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계와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적용제외)가 존재함을 알수 있다.

1) 특례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현황 및 문제점

산재보험법은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 시행령 제122조 제1항).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⁴⁾. 다만, 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2010년도 산재보험 임의가입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주는 10,139명이다⁵⁾(표 4). 이는 당해연도 산재보험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1,569,587개소)의 0.65%에 불과하며 2008년도 0.77%(가입자수 9,846명, 50인 미만 사업장수 1,270,403개소)보다 0.12%p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10년도 화물운송차주 산재보험임의가입 화물운송차주는 347명에 불과하다⁶⁾. 이와 같은 낮은 산재보험가입률은 임의가입제도가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 한국노동연구원. 2010 KLI 노동통계, pp.15~16.

2) DGUV(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Gewerk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aeger der oeffentlichen Hand 2008), p.6.

3) Spitzen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2008), 「Soziale Sicherheit in der Landwirtschaft, Auf einen Blick, Daten und Zahlen」, p.1.

4) 건설기계차기사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5) 이는 2010년도 50인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1,569,587개소의 0.65%임.

6) 이는 2008년 9월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 377,870대의 0.09%임.

표 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전체)	6,856	4,944	9,517	7,596	9,846	8,316	10,353	8,784	10,139	90,931
화물 운송차주	285	59	279	274	287	282	311	307	347	3,354

자료: 고용노동부(2010). 2010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pp.72.

2) 특례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가입 및 본인 신청에 의한 임의탈퇴제도 현황 및 문제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의 4개 직종에 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관련법령 및 조항으로는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범위등), 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 하여 2010년도까지 해당 직종의 사업주가 산재 보험 적용 신고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수는 총 4,531개소이며, 이 중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56.61%(2,45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습지 교사 사업장 19.83%(959개소),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사업장 17.27%(794개소), 골프장캐디 사업장 6.29%(321개소)이다.

이직자를 제외한 입직자수(가입자 수⁷⁾)는 총 389,115명이며, 이중 91.45% (355,859명)가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적용제외(탈퇴) 되어 실적용율은 8.55%이다(표 5). 이와 같은 적용제 외율 2008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산재보험 최초 적용된 이후부터 산재보 험신고 및 적용제외를 처리한 후, 처음 관련 통 계가 산출된 2008년 11월 26일의 적용제외율 83.81%⁸⁾보다 7.64%p 증가, 2009년(88.83%) 보 다 2.62%p증가한 것이다. 즉,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률이 2008년 11월 26일 16.19% 에서 2009년 12월 31일 11.17%, 2010년 8.55% 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문 제점은 첫째, 낮은 적용률, 둘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4개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이외에 이들과 유사한 조건에 있으면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 는 직종의 적용 문제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 적 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 분 류되고 있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7)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된 경우를 입직자, 탈퇴신청을 한 경우를 적용제외자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함.

8) 윤조덕 외(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p.13.

표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이직자 제외) (2010.12.31.)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적용 현황	입직자수(B)	389,115	290,371	12,250	64,964	21,530
	적용제외신청자수(C)	355,859	264,539	8,998	61,266	21,056
	실적용근로자수(B-C)**	33,256	25,832	3,252	3,698	474
	가입사업장수	4,531	2,457	794	959	321
통계	적용제외율(C/B)	91.45	87.93	71.26	93.38	97.79
	실적용율((B-C)/B)	8.55	8.90	26.55	5.69	2.20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11)에서 재구성.

있다⁹⁾ 10): 간병인(약 180,000여명 추계); 대리운전기사(15,000여개의 업체에 8~10만명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컵서비스 배달원(약 3,000여개 업체에 10~13만명 추정);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약 3,000여개의 콜센터에 상담원 약 30만명 추정); 덤프트럭기사(5만여대 등록); 화물운송차주(영업용 화물차 37만여대); 방송사 구성작가; 흥익회 판매원(철도매점) 등.

3. 선진외국의 산재보험 대상과 범위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1) 독일과의 비교 및 시사점

독일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SGB VII)의

가입대상은 제2조에 의한 강제가입, 제3조에 의한 개별 산재보험조합의 정관에 의한 강제가입, 제4조에 의한 보험가입 제외, 제5조에 의한 강제가입 대상 중 특수한 경우의 보험가입제외, 제6조에 의한 임의가입으로 구분된다.

제2조에 의한 강제가입은 취업자, 교육훈련생, 장애인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농업부문의 자영농민 및 그 가족종사자, 가내공업운영자 및 그 배우자, 자영 연안어선 선주 및 어부, 유치원생 · 초중등학교학생 · 대학교 학생,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제3조에 의한 개별 산재보험조합의 정관에 의한 강제가입은 해당 조합 관할영역의 사업주 및 그의 배우자,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는 방문자 및 통행자, 외국에서 독일 국가기관에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4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 제외는 공무원법

9) 이호근 · 김영문 · 윤조덕 · 이영면 · 송보화 · 장상현 · 장혜현 · 한종현(200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노동부.

10) 이호근(200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 논의경과 및 주요쟁점 -국내외 보호대책 사례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6.11.15.,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pp.1~45.

령에 의한 재해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명에 공무원 및 명에 관사는 제외), 자영 의사·치과의사·수의사·심리치료사·어린이청소년 심리치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제외는 농업기업주로서 0.25헥터 미만의 농업기업주 및 그의 배우자로서 신청에 의하여 보험가입 제외된다.

제6조에 의한 임의가입은 사업주 및 그의 배우자, 정당에 명예직 종사자, 사업주단체 및 노동조합 연합단체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당연적용 피보험자 범위 비교(독일과 한국) 및 시사점

독일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SGB VII) 제2조에 의한 당연적용(법적 강제력에 의한) 피보험자는 17개 그룹으로 구분된다(산재보험법 제2조)(표 6). 즉, 취업자 교육훈련생,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피보험 업무행위의 취득을 위하여 또는 종료로 인하여 관련된 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 중에 있는 자, 장애인전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자영농민 및 그의 배우자 등, 가내공업자 및 그의 배우자 등, 자영 어부 및 그의 배우자 등, 유치원원아·초중고학생·대학생, 보건의료기관등의 명예직 종사자,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명예직 종사자, 공공기관·단체의 업무 협조자 등, 비상 상황 시 조력자 등, 공공의 위험시 조력자 등, 구직중인 자, 재활치료 중인 자, 공공기관이 장려하는 주택을 자력으로 짓고 있는 자, 개호가 필요한 자의 간호인 등이다.

당연적용 피보험자 그룹의 독일과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산재보험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① 취업자 그룹에서 유사자영업자, 법률에 의하여 구급중인 자 또는 형벌, 검찰의 명령 또는 청소년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반 취업자와 유사하게 취업하고 있는 자; 외국에서 독일 연방 또는 주들의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독일인 또는 그 기관의 책임자, 독일 구성원 또는 근무자를 위해 고용된 독일인
- ②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피보험 업무행위의 취득을 위하여 또는 종료로 인하여 관련된 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 중에 있는 자
- ③ 인증 장애인 전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 ④ 자영농민 및 그의 배우자 등
- ⑤ 가내공업자 및 그의 배우자 등
- ⑥ 유치원원아·초중고학생·대학생
- ⑦ 보건의료기관등의 명예직 종사자
- ⑧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명예직 종사자
- ⑨ 공공기관·단체의 업무 협조자 등
- ⑩ 비상 상황 시 조력자 등
- ⑪ 공공의 위험시 조력자 등,
- ⑫ 구직중인 자
- ⑬ 재활치료 중인 자
- ⑭ 공공기관이 장려하는 주택을 자력으로 짓고 있는 자
- ⑮ 개호가 필요한 자의 간호인

이와 같이 독일과 비교하여 한국 산재보험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룹들에 대하여 우

선순위를 검토하여 점차적인 적용방안을 모색
함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가내 공업자 및 그의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배우자, 자영농민 및 그
의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배우자¹¹⁾, 유치원원

아·초중고학생·대학생 등의 그룹¹²⁾에 대하여
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적극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6. 산재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 비교(독일과 한국)

적용 대상	독 일	한 국
1. 취업자	취업자; 법률에 의하여 구급종인 자 또는 형벌, 검찰의 명령 또는 청소년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반 취업자와 유사하게 취업하고 있는 자; 외국에서 독일 연방 또는 주들의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독일인 또는 그 기관의 책임자, 독일 구성원 또는 근무자를 위해 고용된 독일인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교육훈련생	사업장, 실습장, 교육과정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직업훈련(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중인 피교육자	현장실습생(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3. 산재보험 피보험 업무행위 취득 또는 종료 관련	산재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 업무행위의 취득을 위하여 또는 피보험 업무 행위의 종료로 인하여 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중에 있는 자	-
4. 장애인	인증 장애인 전용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인증 맹인전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또는 이와 같은 시설들을 위하여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
5. 자영농민 및 그의 배우자 등	농업부문 사업의 사업주 및 당해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농업부문 사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주의 가족(본인의 3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사업주 또는 그 배우자가 후견하는 자); 농업부문 사업에서 주식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법적형태로 정기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종사하는 자영업자; 농업부문 사업에서 직접 농업의 안전, 감독 또는 장려에 주로 기여하는 명예직에 있는 자; 농업부문 직종연합회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수렵업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종사자(근로자);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6. 가내공업자 및 그의 배우자 등	가내공업자와 중간관리자 및 그들과 같이 종사하는 배우자	-
7. 자영업주 및 그의 배우자 등	연안 해역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자영 선주 및 어부 또는 선박을 자가 소유하고는 있지 않으나 상시적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연안 어부 및 그들과 같이 종사하는 배우자	어업 중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종사자(근로자);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8. 유치원생, 초중고생, 대학생	공인을 필요로 하는 주간시설들(유치원, 탁아소 등)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의 아이들; 일반계 학교, 실업계 학교의 학생; 대학생(기초교육 또는 향상교육훈련 중에 있는)	-

11) 농업인재해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 김우남의원, 황영철의원, 강기갑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장은수 (2010). 농작업재해보장 및 보험 법률안을 중심으로(토론문), 농업노동(농작업)재해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농어업희생 국회의원모임, pp.57~58).

12) 윤조덕(2011)은 독일 산재보험의 학생산재보험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학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윤조덕(2011). 사회안전망 기능체계화를 위한 산재보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pp.126~165).

〈표 6〉 계속

적용 대상	독 일	한 국
9. 보건의료기관 등의 명예직 종사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또는 무보수로, 특히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
10.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명예직 종사자	공법에 의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재단 또는 이들의 연합단체 또는 사업공동체를 위하여 앞의 2호 및 8호에서 명명하는 시설에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공법적 종교단체 및 그들의 시설에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
11. 공공기관, 단체의 업무 협조자 등	공법에 의한 공공기관, 단체, 재단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공기관의 증거검증을 위하여 증인으로 불러들인 자	-
12. 비상상황시 조력자 등	사업장 내에서 불의의 사고 시 또는 시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에 무보수로, 특히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또는 이들 사업의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자	-
13. 공공의 위험시 조력자 등	불의의 사고 또는 공공의 위험 또는 비상 시 조력하는 자 또는 현저한 현존하는 건강위험에 처한자를 구출하는 자; 헌혈자 또는 신체조직 기증자; 범죄용의자를 추적시 또는 체포시 또는 불법적으로 습격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력하는 자	-
14. 구직자	구직자 기초보장법(SGB II) 또는 노동촉진법(SGB III)의 규정들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진 자로서 독일연방고용청으로부터 당해 업무부서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업무부서를 방문하라는 개별적 특별요청을 수행하는 자	-
15. 재활치료 중인 자	의료보험 또는 연금보험 또는 농업부문 노령연금의 비용으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중인 또는 입원의료재활이나 통원의료재활 중인 자; 연금보험 또는 독일연방고용청에 의하여 고용촉진대책의 재활부분의 일환으로 당해 업무부서 또는 타업무부처를 방문하는 자; 산재보험운영기관의 비용으로 직업병 시행령(BKV: Berufskrankheiten-Verordnung) 제3조에 의한 예방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16. 공공기관이 장려하는 주택을 자력으로 짓고 있는 자	주택 건설 법 (Zweiten Wohnungsbaugesetz) 또는 주거지 촉진 법 (Wohnraumförderungsgesetz)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장려하는 주택을 자력으로 짓고 있는 자	-
17. 개호가 필요한 자의 간호인	개호인법(SGB XI) 제 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호가 필요한 자를 간호하는 제19조에 정의된 간호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개호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체부분의 간호와, 이 개호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 식사 시 조력, 활동시 조력 및 가사조력을 포함.	-
18. 취업자 정의의 확대 적용	법률에 의하여 구금중인 자 또는 형벌, 검찰의 명령 또는 청소년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반 취업자와 유사하게 취업하고 있는 자; 외국에서 독일 연방 또는 주들의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독일인 또는 그 기관의 책임자, 독일 구성원 또는 근무자를 위해 고용된 독일인.	-
19. 산재보험조합의 정관에 의한 강제가입 대상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자 사업장에 체재하는 자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및 시민적 참여자	-

자료: 독일 산재보험법(SGB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제2조 및 제3조; 한국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 2조.

(2) 산재보험 비적용 대상 비교(독일과 한국) 및 시사점

비적용 대상은 공무원 등, 종교단체 종사자 등, 비영리 종사자 등, 자영 의사·약사 등, 소규

모 건설 공사, 가구내 고용 활동, 1인 미만 사업의 여섯구름으로 구분된다(표 7).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산재보험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내 고용활동¹³⁾,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에 대한 점차적 적용방

표 7. 산재보험 비적용대상 비교(독일과 한국)

비적용 대상	독 일	한 국
1. 공무원 등	공무원법에 의한 사고보상규정 또는 이와 상응하는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데에 해당되는 자: 명예공무원과 명예직 판사는 제외됨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종교단체 종사자 등	종교단체 정규 종사자, 전도사 및 이와 유사한 단체의 임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그 공동체 속에서 일반적인 부양에 관한 요구권이 보장되는 자 또는 그 부양보장의 이행이 확실하게 된 자	(적용 제외)
3. 비영리 종사자 등	어업허가권 또는 수렵허가권 소지자로서 임시로(일상적이 아닌) 고기잡이 또는 수렵에 참가하고 있는 자; 내륙어업의 사업주, 양봉업의 사업주, 농업 및 축산업의 사업주로서 이들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타 영농기업의 보조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와 그리고 이들 사업들에서 사업주들과 같이 종사하는 배우자들: 또한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후견하는 자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자. 양봉업에서 꿀통이 25개 미만이면 비영리에 해당함	(적용 제외)
4. 자영 의사, 약사 등	자유롭게 자영으로 영업을 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심리치료사, 어린이와 청소년 심리치료사, 자연요법 치료사, 약사	(적용 제외)
5. 소규모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6. 가구내 고용활동	-	가구내 고용 활동
7. 1인 미만 고용 사업	-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자료: 독일 산재보험법(SGB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제4조; 한국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13) 김상호(2010)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타당성 분석을 하고 적용타당성을 제안하였음(김상호(2010).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연구, 26(4), 한국사회보장학회, pp.195~213).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일본과의 비교 및 시사점

노재보험법(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노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주나 노동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연 적용사업(또는 강제적 용사업)(노재보험법 제3조 제1항),

둘째, 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과 관련 기관의 인가에 의하여 적용되는 잠정임의적용사업(1969년 개정법 부칙 제12조),

셋째, 소규모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노동자에 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특별가입제도

(1) 당연적용 피보험자 범위 비교(일본과 한국) 및 시사점

일본 노동보험(노재보험,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은 ‘사업’ 단위이다. 이 사업이란, 사업목적이 영리적이던 비영리적이던 상관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며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경영조직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이란 하나의 회사(사업주)가 본사 이외의 지점, 공장, 영업소 등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총합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점, 공장,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마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¹⁴⁾, 즉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¹⁵⁾.

한국 산재보험제도는 초기 도입단계에 일본 노재보험제도를 참조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도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제도 및 사업을 참조하고 있다.

(2) 잠정임의적용사업 범위 비교(일본과 한국) 및 시사점

일본 잠정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 자신은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없어도, 당해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과반수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때는 사업주는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잠정임의적용사업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사업주가 정부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정부의 인가가 있을 때 비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잠정임의적용사업의 범위는 <표 8>과 같다.

반면에 한국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14) 노동자란 사업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사람을 말하고,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산재보험의 노동자라고 하지 않음.

15) 임금이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그 외에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에게 보험연도 중에 지불한 모든 임금(세 포함)을 말함(징수법 제2조제2항).

표 8. 산재보험 당연 가입/적용제외 대상 비교(일본과 한국)

적용 대상	일 본	한 국
1. 적용범위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함(노재보험법 제3조 제1항)(노동자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사람을 말하고,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산재보험의 노동자라 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산재보험법 제6조)
2. 적용제외	국가의 직영사업, 관공서 공사, 선원보험법 규정에 의한 선원보험의 피보험자(노재보험법 제32조 제2항)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할때에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산재보험의 잠정임의가입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근로자 자신의 요구에 의한 산재보험보호가 가능케 되면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3) 특별가입제도 비교(일본과 한국) 및 시사점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¹⁶⁾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노재보험법 ‘이라 함) 제1조에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공정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부를 행하고(중략)...., 이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재보험제도는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의 노동재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노동자가 아닌 자(사업주, 자영업자 등)의 업무중 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본래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 노동자가 아닌 자 중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업무실패나 재해의 발생상황에서 볼 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재보험에 의해 보호되어야 자들이 존재한다.

16) 三信圖書, ひと目でわかる 労災保険の 特別加入, 平成13年

표 9. 산재보험 잠정임의적용 방법 및 가입대상 비교(일본과 한국)

적용 대상	일 본	한 국
1. 적용 방법	잠정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 자신은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없어도, 당해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과반수가 보험가입을 희망할 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의 인가가 있을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징수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
2. 적용 범위	1) 농업 중 노동자 4인 이하의 개인경영 사업으로 특정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을 주로 실시하는 사업 이외의 것 단,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특별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2) 임업 중 노동자를 상시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연간 사용 총 노동자수가 299명 이하의 개인경영 사업 3) 노동자수 4인 이하의 개인 경영의 축산, 양잠 또는 수산업(총 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사업 또는 재해발생의 염려가 적은 수면 등에서 주로 조업하는 것에 한함)의 사업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또한 노재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속지주의에 의해 일본 국내에 한하여져 있어, 국내의 사업장에서 국외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않게 되어 있다. 노재보험에서는 이러한 본래 노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자 중 일부의 자에 대하여 노재보험의 원래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등 보험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특별히 노재보험에 대한 가입을 인정하여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꾀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특별가입제도”라 한다.

특별가입제도는 임의가입제도로써 노재보

험에 대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특별가입신청을 하여 소관 기관(노동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가입제도에 의하여 특별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①업무의 실태, 재해의 발생상황 등에 비추어 노동기준법의 적용노동자에 준하여 보호하기에 타당한 자인지 아닌지, ②노동관계 하에 있는 노동자와 달리, 업무범위가 노동계약, 노동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업무 실태에서 볼 때 그 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고, 업무재해의 인정을 시작으로 보험관계의 적정한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⁷⁾.

17) 1960년 특별가입제도 창설시 노동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답신하고 있음. “...특별사업에 간해서는 업무의 실태, 재해

특별가입이 가능한 자는 중소기업주 등, 자영업자 등, 특정작업종사자, 해외파견자의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표 10).

한국은 특별가입(특례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사업주, 자영업자, 해외파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대상에 특정작업종사자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적 특성을 토대로 특정작업종사자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10. 산재보험 특별가입/특례가입 범위 및 가입수속 방법 비교(일본과 한국)

구분	일 본	한 국
중 소 사업주	가입범위: 1) 중소기업주(사업주가 법인 그 외의 단체인 경우는) 및 그 가족 종사자(특별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주는 상시 300인(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으로 50인,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은 10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16). 2)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대표자 이외의 임원 중 노동자가 아닌 자(노재보험법 제33조 제1호 및 제2호, 시행규칙 제46조의16) 가입방법: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위탁(징수법 제33~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함)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산재보험법 제124조).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자 영업자 등	가입범위: 자영업자, 그 외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상시로 하는 자영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가족종사자 가.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 나. 건설사업 다.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 채취사업 라. 임업사업 마. 의약품의 배채판매사업 바. 재생자원취급사업(노재보험법 제33조 제3호 및 제4호, 시행규칙 제46조의17) 가입방법: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위탁(징수법 제33~36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사람.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발생상황으로부터 노동기준법의 적용노동자에 준해서 보호해야 마땅한 자에 대해서, 특례로서 노재보험을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그 실시예 즈음해서는 노재보험 본래의 명분을 이탈하거나 제도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특별가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위험도 내지 그 사업의 재해율에 비추어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고려함과 동시에, 특별가입자의 종사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성 내지는 특정성이 있어, 보험업무의 기술적 처리의 적확(的確)을 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만 하며…”.

〈표 10〉 계속

구분	일 본	한 국
특 정 작 업 종 사 자	가입범위(노재보험법 제33조제5호): 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토지경작 혹은 개간, 식물의 재배 혹은 채취 또는 가축(양봉을 포함) 혹은 누에 사육의 작업으로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되는 것 ① 동력에 의해 가동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② 높이가 2m 이상의 개소(장소)에서의 작업 ③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별표 제6제7호에 기재한 산소결함위험장소에서의 작업 ④ 농약 산포 작업 ⑤ 소, 말 또는 돼지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종류의 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 ① 고령자등의고용안전에관한법률 제15호 제1항3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적응훈련종사자 ②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실시요령에 규정하는 사업주 단체 등 위탁훈련 대상자 중, 이직자로 공공직업안전소장으로부터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의 수강지시 또는 수강추천을 받은 고용보험수급자격자 및 사업주 단체 등 위탁훈련을 수강한 젊은 구직자 라. 가내노동법의 적용에 있는 가내노동자와 그 보조자인 칙 제46조의 18 제3호에서 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마. 노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74호) 제2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노동조합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상시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의 상근 임원이 실시하는 집회운영, 단체교섭 그 외의 해당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관한 작업으로, 해당 노동조합 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회장 또는 도로공원 그 외의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있는 자(해당 작업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 바.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등의 개선등에 관한법률(1992년 법률 제6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호관계 업무에 관련된 작업으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 일상생활상의 수고, 기능훈련 또는 간호에 관련된 자 가입방법: 특정작업종사자로 구성되는 단체(징수법 제33~36조)	-

표 11. 산재보험 특별가입/특례가입 범위 및 가입수속 방법 비교(일본과 한국) (계속)

구분	일 본	한 국
해 외 파 견 자	가입범위(노재보험법 제33조 제6호 및 제7호, 시행규칙 제46조의25의2) 가. 국제협력사업단체 등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를 의무로 하는 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개발도상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일본국내에서 실시되는 사업(계속사업에 한함)에서 파견되어 해외지점, 공장, 현장, 현지법인, 해외의 제휴처 기업 등 해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다. 일본국내에서 실시되는 사업(계속사업에 한함)에서 파견되어 해외지점, 공장, 현장, 현지법인, 해외의 제휴처 기업 등 해외에서 실시되는 300인 이하(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으로는 50인,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에서는 100인)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그 외 노동자 이외의 자 가입방법: 파견원인 단체 또는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함)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함)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산재보험법 제125조). 대상: 1. 보험설계사 2.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 학습지교사 4.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4. 결론 및 정책제언

한국 산재보험의 적용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연가입 대상이 제한적이다. 한국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취업자의 59.07%에 불과한

반면 독일의 경우는 전국민의 92%이상이다.

둘째, 임의가입 대상자의 가입률 저조하다. 2010년 임의가입 중소기업사업주는 10,139명으로 이는 당해연도 50인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1,569,587개소의 0.65%에 불과하다. 이는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직군에 대한 판단과 보험료 납부 주체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골프장 캐디,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4개 직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타 직종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정의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탈퇴율이 아주 높다. 현행제도는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 신청에 의한 임의 탈퇴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0년 12월의 실적용률은 8.55%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91.45%가 강제가입 후 임의탈퇴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높은 탈퇴율은 제도의 미비점이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개

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독일과 일본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의 두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행 법체계를 벗어나서 산재보험 피보험자를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독일 산재보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 이외의 모든 취업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현행 법체계 내에서 특례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유사 자영업자 포함) 등을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다. 예로써 일본의 특별가입제도 등의 벤치마킹이다. 보건복지